

2001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

심 영 택

행정자치부 세제과 행정사무관

I. 머리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령¹⁾ 개정의 주요내용은 새차·현차의 차등과세 등 자동차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 법인의 경제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오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지방세제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제도의 재검토 조정,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과 세율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담배소비세율과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 농지세의 농업소득세로의 전환과 과세대상의 조정, 기타 현행 세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 등이다.

본고에서는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그 도입배경과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기타 현행 세제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개정내용의 대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은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공포되었고,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은 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각각 공포되었다.

II. 주요개정내용

1. 새차·현차 차등과세 제도 도입

1) 배 경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도로·교량·주차장 등)의 이용과 환경오염, 교통난 등을 유발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 및 자동차라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복합적 성격²⁾의 세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90년대 후반이후 자동차가 생활편의품으로 국민 누구나 소유³⁾하게 되면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새차의 경우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10년된 차의 경우나 똑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않다는 국민적 불만이 제기 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99년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에서의 현차에 대한 세금 인하 문제 제기, 1999년말 한나라당 및 자민련에서 현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의원입법안 제출, 2000년에는 국회전자민주주의 연구회에서의 cyber시민토론회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시민공청회가 있었고, 전국 시·도지사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건의 등이 있

2) 현재까지 자동차세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하여 왔으며, 일부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비교하여 자동차세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의식주의 하나인 주택의 재산세와의 단순비교하여 세부담의 과다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자동차등록통계월보에 따르면 2000.10월말 현재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1,939,637대(승용자동차는 68%인 8,070,203대)로 2000.2.1현재 가구수 15,442,700, 인구 47,335,257명과 비교해볼 때 1.29가구당 1대(승용차 1.91가구당 1대), 3.96명당 1대(승용차 5.87명당 1대)가 된다. 또한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대이상 보유가구가 133만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었다.

이와 같은 국민여론 및 정부의 자동차세 관련세제의 「취득·보유과세 완화, 이용과세 강화」 정책 방향과 자동차세 부담의 지속적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측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새차·현차 차등과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개정개요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최초등록일 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체증경감하되, 12년이 되는 해 이후부터는 50%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차령별 자동차세 경감율

연수별	2년 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1년 초과
경감율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3) 개정조문 및 해설

○ 자동차세 경감 - 법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 신설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은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에 cc 당 세액(80원~220원)을 곱하여 당해 자동차가 1년간 납부해야할 연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업용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연세액 계산을 새차와 달리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새로 신설하였다.

<법 제196조의5 제1항>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非營業用 乘用自動車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車齡(이하 이 호에서 “車齡”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第1期分(1월부터 6월 까지) 및 第2期分(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年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車齡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車齡을 12년으로 본다.

$$\text{자동차 1대의 각 期分稅額} = A/2 - (A/2 \times 5/100)(n - 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年稅額

n : 車齡 (2 ≤ n ≤ 12)

이 경우 차령을 2년과 같거나 큰 것으로 한 것은 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기에는 차령이 2년이고 제2기에는 차령이 3년이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연세액의 계산을 위해서이며, 차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 차령계산 - 영제146조의3 제2항 신설

중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을 위한 차령의 계산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령기산일에 따라 계산하되, 그 차령의 계산방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3제2항에서 구체적인 산식으로 정하였다.

<영 제146조의3>

② 법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이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인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 제외)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을 기산일로 하며,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 포함)는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을,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산일로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11.13일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수입된 자동차를 막론하고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이 되며,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마련중이므로 향후 그 개정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1995.12.20 최초로 신규등록한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예로 들어 지방세법 개정 전후의 자동차세 부담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전>

- 연세액 : 배기량(2,000cc) × cc당 세액(200원) = 400,000원

<개정후 2001년 연세액>

- 차 령

· 제1기 : 2001 - 1995 = 6년

· 제2기 : 2001 - 1995 + 1 = 7년

- 연세액 : 제1기분세액 + 제2기분세액 = 350,000원

· 제1기 : 200,000원(개정규정이 2001.7.1부터 적용되므로 20001년 제1기분 세액은 200,000원으로 종전과 같음)

· 제2기 : 150,000원 = (400,000/2)-(400,000/2)×(5/100)×(7-2)

※ 2002년 연세액 : 제1기분세액(차령7년 150,000원) + 제2기분세액(차령8년 140,000원) = 290,000원

○기별 구분과세 - 법제196조의6 제1항 개정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2회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으나,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를 시행할 때 제1기와 제2기의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2기분 과세

기간(7.1~12.31)중에 승계취득으로 인한 일할계산 과세시 승계취득자가 불리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연세액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2회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분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지방세법 제196조의6을 개정하였다.

<법 제196조의6 >

① 자동차세는 1臺當 年稅額을 2分の1의 金額으로 分割한 稅額(非營業用 乘用自動車의 경우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各 期分稅額)을 다음 各 期間내에 그 納期가 있는 달의 1日 현재의 自動車 所有者로부터 自動車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郡에서 徵收한다. 다만, 納稅義務者가 年稅額을 4分の1의 金額(非營業用 乘用自動車의 경우는 各 期分稅額의 2分の1의 金額)으로 分割하여 납부하고자 申請하는 경우에는 第1期分 稅額의 2分の1은 3月 16日부터 3月 31日까지의 期間중에, 第2期分 稅額의 2分の1은 9月 16日부터 9月 30日까지 期間중에 各 分割하여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郡에서 納期중에 徵收할 稅額은 이미 分割하여 徵收한 稅額을 公제한 金額으로 한다.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자동차세의 과세기본원칙인 연세액⁴⁾ 제도를 유지하면서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6 규정에 따라 각 기분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승계취득에 따른 합리적인 일할계산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특히,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서는 자동차세 차등과세 제도가 2001.7.1부터 시행됨을 감안하여 2001년도의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 제2기분의 경우는 연세액의 2분의1이 아닌 기별 자동차세 산출공식에 차령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으며, 2001년 1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제2기분 세액은 경감된 세액으로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4)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시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196조의5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면 되나, 연세액 일시납부후 승계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제19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령 제146조의7를 개정하여 차량이 3년이상 된 자동차가 과세기간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에는 연간일수를 분모로 하여 연세액을 일할계산하던 것을 당해 자동차의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기분의 총일수를 분모로 하여 당해기분 세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과세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예를 들은 1995.12.20 최초로 신규등록한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2001.11.11일 양도양수한 경우의 자동차세 일할계산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양도자 : $150,000\text{원} \times 134/184 = 109,230$ (단수절삭)
- 양수자 : $150,000\text{원} \times 50/184 = 40,760$

2.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

1) 배 경

면허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음으로 누리는 혜택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세금으로서 신규면허를 받을 때에 징수하고, 허가가 2년이상 유효할 경우 매년 당해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면허와 달리 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시 고율(3~5%)의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그 후 매년 일정액의 면허세를 계속 과세하는 것은 면허세의 성격에 비추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자동차에 대한 세금의 종류가 많고 부담이 크므로 취득·보유단계의 부담은 완화하여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비추어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면허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2) 개정개요

개정된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에 규정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에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서 자동차 등록면허 관련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 자동차 면허세 폐지 - 영 별표 개정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제1종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3,000cc 이상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삭제>
제2종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1,600cc 이상 3,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삭제>
제3종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1,400cc 이상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삭제>
제4종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와 1,4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삭제>
제5종	2. 이륜자동차 사용. 다만, 125cc 이하는 제외한다	<삭제>

3. 자동차 관련세제개편에 따른 주행세율 인상

1) 배 경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로 연간 약 5,248억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이 있을 것으로 추계 되나,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이에 대한 보전 없이 지방재정에 자체흡수하기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중 거래과세인 취득세·등록세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인상하여 보전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하므로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정부의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편방향인 『취득·보유과세 완화, 이용과세 강화』 방향에도 적합하므로 주행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 경유 및 LPG에 대한 교통세등 세부담이 인상되게 되므로 이로 인한 가격인상요인이 버스, 택시, 화물 등의 요금인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수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보조금액을 주행세율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기로 함에 따라 이 보조금액 만큼을 주행세율을 인상 반영하게 되었다.

자동차 관련세제의 개편은 당초에는 2001.1.1부터 시행하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5,248억원(연간)에 대하여는 국가의 에너지세제 개편(당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예정)으로 증수되는 국세재원에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에너지세가 3년간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 부담이 크게되므로 이의 완화를 위하여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의 시행시기를 당초 2001.4.1에서 2001.7.1로 연기하고, 인상기간도 2001년~2003년까지 3년간에서 2001년~2006년까지 6년간으로 연장됨에 따라 연간 5,000억원의 국세 징수예상의 차질이 발생하여 지방세수 감소액 전액보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동차세 차등과세 시기와 주행세율 인상시기를 2001.1.1에서 2001.7.1로 연기하였으며,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도 2002년으로 연기하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의 보전에 대하여는 2001년중에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지방세법 부칙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하게 된다

2) 개정개요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제1항에서 주행세율을 현행 3.2%에서 11.5%로 인상하였으며, 제2항에서 30%의 탄력세율을 규정하여 교통세율의 변동 및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 주행세율의 인상조정 - 법제196조의17

지방세법 제196조의17을 개정하여 주행세율을 현행 3.2%에서 11.5%로 인상조정하였다. 주행세의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그 인상된 만큼 교통세의 세율이 인하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행세율의 적용은 2001.1.1~2001.6.30까지는 현행과 같이 3.2%의 세율(세수 1,856억원)을 적용하게 되며, 2001.7.1~2001.12.31까지는 11.5%(세수 4,811억원)를 적용하게 되어 2001년 총 주행세수는 약 6,667억원으로 추계 된다. 주행세율 11.5%의 내용을 보면, 현행 주행세율 3.2%(1,326억원), 새차·현차 차등과세에 따른 자동차세 수 감소액 3.9%(1,624억원, 연간 3,248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재원 4.4%(1,861억원)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보조금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액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의 대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일률적으로 4.4%의 세수가 배분되는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용 차량대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조금액에 따라 배분되며, 주행세율이 7.1부터 인상되더라도 7월분 유류반출에 대한 주행세는 8월에 납세가 되므로 인상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세입이 되는 것은 8월부터가 된다.

<법 제196조의17>

- ① 走行税의 稅率은 課稅物品에 대한 交通稅額의 1,000分の 115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稅率은 交通稅率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稅率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교통세법시행령의 개정(2000.12.30, 대통령령 제17043호)으로 2001.7.1부터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리터당 630원에서 588원으로 인하된다.

제8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①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보조금의 배분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각 시·군별 보조금액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총 주행세중에서 배분하게 된다.

<영 제146조의15>

- ①법제196조의18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자동차세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전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보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 × 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4.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과세

1) 배 경

'99.12.28 개정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6060호) 부칙 제5조에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자동차분류가 변경됨에 따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세율적용에 있어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더라도 2004년까지는 승용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승합세율을 적용하려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는 2004년까지 승합세율 적용대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으로 규정하고 있어 2001년 이후에 새로이 승용자동차로 등록하는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2000.12.31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자동차 분류시기가 당초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변경되었고, 자동차분 면허세가 2001년부터 폐지됨에 따른 조문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2) 개정개요

그 개정내용을 보면 동 부칙 제5조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으로, “등록세·면허세”를 “등록세”로, “제132조의2·제164조”를 “제132조의2”로 하고, 동조제1호중 “2000년”을 “2001년”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로 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7~10인승에 대한 자동차세등 세율적용 -1999.12.28. 법률 제6060호 부칙제5조 개정

2001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는 2000.12.31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자동차나 2001.1.1 이후에 승용차로 등록되는 자동차나 그 등록구분에 관계없이 2004년까지는 등록세나 자동차세의 과세시 지방세법에 의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조세의 일반원칙인 형평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

는 동등한 세금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⁶⁾과 2000.12.31 취득자와 2001.1.1 취득자간에 너무나 큰 세부담 불형평 발생으로 인한 2001.1.1이후 취득자의 새로운 조세불만을 해소하고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더라도 바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00.12.31.이전 취득자의 기득권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2001.1.1.이후 취득자도 차종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으로 유예기간 제도를 설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1999.12.28. 법률 제6060호 부칙제5조>

第5條(7人乘이상 10人乘 이하 乘用自動車에 대한 課稅特例)自動車管理法에 의하여 自動車의 區分基準이 2001년 1월 1일부터 乘用自動車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自動車管理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乘用自動車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登錄稅 및 自動車稅는 第132條의2 및 第196條의5 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乘合自動車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乘合自動車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自動車管理法에 의한 自動車의 區分基準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에 乘用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과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의 差額의 100分の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計算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에 乘用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과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의 差額의 100分の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計算한 금액

6)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의 경우 매년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그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령과 현황에 따라 과세된다.

예) 과세기준일 현행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 대지로 과세

5. 지방세 부가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및 세율인상

1) 배 경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 확보 및 교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높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지방세로 부담함으로써 자치단체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로서 특별·광역시세·도세로 구분된다.

지방교육세 세율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교육환경개선 등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향후 5년간('00~'04)총 34.3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중 6.4조원(연 1.6조원)을 교육세 증세를 통하여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모든 지방교육세⁷⁾의 세율인상을 요청하였으나, 재산세·종합토지세는 납세자가 1천만명을 넘는 대중세인 점을 감안하여 세율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담배소비의 사회적 해악이나 경륜·경마의 사행성 등을 감안하여 경주·마권세 및 담배소비세에 한하여 각각 10%씩 세율을 인상 조정하게 된 것이다.

지방교육세의 신설에 따라 2001년 지방교육세 세수추계는 34,780억원으로 2000년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예산규모 29,695억원보다 5,085억원(17%증)이 증가하게 되나, 지방교육세 세입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한 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게 되므로 실제적인 지방세수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2) 개정개요

현행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등록세·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종합

7) 교육부에서는 향후 5년간('00~'04)총 34.3조원을 투자하고, 이중 6.4조원(연 1.6조원)은 교육세 등 조세부담 인상을 통해 조달할 계획으로 모든 교육세의 세율인상을 요청하였다.

- 경주·마권세분 50 → 80%, 재산세분 20 → 40%, 종합토지세분 20 → 40%, 담배소비세분 40 → 60%

토지세분)를 그대로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면서 2000년에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교육세의 시한을 2005년까지 연장하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담배소비세분은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경주·마권세분은 현행 50% → 60%로 세율을 인상하였다.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경주·마권세 제외)의 50%범위내⁸⁾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 교육재정의 조기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상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 지방교육세의 세목구분 - 법제5조·제6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특별·광역시세, 도세가 된다.

○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 - 법제260조의2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세 당시의 교육세 납세의무자와 같으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 제외),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 포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지방교육세의 세율 - 법제260조의3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주·마권세분 지방교육세를 제외⁹⁾하고,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안에

8) 현행 교육세에서는 교육세법시행령에서 30%의 탄력세율을 두고 있으나,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5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9)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지역별로 환급율의 차이가 발생하여 경매장 운영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감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다.

<표 2> 지방교육세의 세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 교육세 당시의 세율
1	등록세액	20%	20%
2	경주·마권세액	60%(10%중)	50%
3	주민세균등할 세액	10~25%	10~25%
4	재산세액	20%	20%
5	자동차세액	30%	30%
6	담배소비세액	50%(10%중)	40%
7	종합토지세액	20%	20%

지방교육세의 세율 적용에 있어 주의할 점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마권세분교육세는 2005.12.31까지는 60%의 세율을 적용하나, 2006.1.1부터는 '95년 이전 세율인 20%로 환원하게 되며, 담배소비세분교육세의 경우는 2005년까지만 과세하게 된다는 점이다.

○ 지방교육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법제260조의4, 영제218조·제218조의2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가 지방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더라도 시행령 제21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등록세, 경주·마권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세의 추징 및 가산세 - 법제260조의5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지방교육세의 환부 - 법제260조의6

지방교육세의 과오납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부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부한다.

○ 지방교육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 법제53조 제2항 단서

지방교육세의 경우 지방교육세는 도세(특별·광역시세)이므로 다른 도세(특별·광역시세)와 마찬가지로 시·군·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함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하나, 다른 지방세와는 달리 지방교육세는 이미 산출된 지방세액을 과표로 하는 부가세이므로 별도의 징수경비가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교육세의 경우도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고 있고, 교육재정의 확보 필요성에 따라 징수교부금은 교부하지 않는 점¹⁰⁾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 제53조제2항 단서>

다만, 당해 地方稅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道稅를 당해 地方稅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徵收交付金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부칙 제12조

지방교육세는 교육세중이 일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한 것이므로 교육세 당시에 교육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의 지방교육세를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교육세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교육세와 관련한 조항이 다른 법령¹¹⁾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로 보도록 하였다.

10) 법제53조제2항 단서의 신설과 관련하여 법규정 해석의 착오로 공동시설세나 도시계획세 등의 경우도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 등 지방세액을 과표로 하는 부가세이므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으나, 공동시설세 등은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이므로 징수교부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11) 다른 법령에 교육세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예로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외국인관광객등에

<법 부칙 제12조>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에 관하여 종전의 교육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관한 것으로 본다.

6.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

1) 배 경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39.4%(시 50.6%, 군 22%)로서 취약하므로 이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담배소비억제를 위해 2003년까지 유해성분 허용기준 강화 및 세금인상 등 담배규제국제협약(FCTC)을 추진하고 있는 등 외국에서도 담배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sin tax로서 담배에 대한 세부담을 인상하는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담배소비세율을 소폭 인상조정하게 되었다.

담배소비세율의 인상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약 2,200억원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담배가격 중 조세비중은 외국¹²⁾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부담비중이 71%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영국의 79.7%, 프랑스의 78.5%, 이탈리아의 76.6%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3조제1항제5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0의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호, 관세법 제26조의2제1항 등이다.

12) 외국과의 담배가격 및 세부담율 비교

- 담배가격(US \$기준) 수준 : 한국 0.92, 일본 1.74, 미국 1.89, 영국 4.28, 프랑스 2.8 이태리 1.7,
- 세부담율 : 한국 67.7%, 영국 79.7, 프랑스 78.5, 이태리 76.6

2) 개정개요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에서 법정세율의 30%범위내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30%인상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을 모두 법정세율로 규정하고, 담배소비세중 제1종 궤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조정세율)에서 510원으로 50원을 인상조정 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 담배소비세 세율조정 - 법제229조, 영제173조의2 삭제
-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 조정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담배소비세 세율조정

담배종별	단위	개정전세율(원)		개정(원)	비 고	
		법정세율	조정세율	법정세율		
흡연용	제1종 궤련	20개비	360	460	510	조정세율의 법정화
	제2종 파이프담배	50g	700	910	910	
	제3종 엽궤련	"	2,000	2,600	2,600	
	제4종 각련	"	700	910	910	
쌈담배	"	800	1,040	1,040		
냄새맡는 담배	"	500	910	910		

7.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폐지

1) 배 경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법인의 불요

불급한 토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하여 1973년에 3배 중과제도 도입후 1974년 긴급조치로 7.5배 중과로 인상하였다가 '99년부터는 다시 중과세 배율을 5배로 인하하고, 유예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였다가 '98년도에 다시 3년으로 완화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기업이 업무용외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토지이용의 비효율화를 막고 국민경제 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비업무용토지의 판정기준이 일정한 유예기간, 사용면적 등으로 규제함으로써 경제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사정에 따라 매각·교환·사용의 일시유보 등의 경제현상을 신축적으로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비업무용 판정을 모면하기 위하여 무리한 건축을 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등 토지의 활용에 오히려 역작용을 하는 사례가 발생¹³⁾되고 있고, 각종 토지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공개념입법¹⁴⁾ 등도 기업규제완화 등의 측면에서 폐지 또는 대폭 완화되었는데도 지방세법에서만 규제를 하고 있어 법인으로부터 지방세가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세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어려워 세무담당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재될 여지가 많아 이에 따른 민원이 많았으며, 특히, '99.5.7 기업규제완화위원회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는 최근 경제여건 및 기업환경의 변화로 제도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2001.1.1부터 폐지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약 1,700억원 정도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나, 이는 정상적인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부과함에 따라 향유하던 반사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를 면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물 또는 건본주택 등을 지었다가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중과세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14) 토지 공개념입법 폐지 또는 완화내용을 보면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94), 주거레은행의 기업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취득 금지를 규정한 은행여신관리업무시행 세칙 폐지('97), 법인세법 규정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용어 폐지('98), 자산재평가법 중 비업무용 토지는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폐지('98),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폐지('98), 개발이익부담금 제도도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02년부터 폐지예정 등이다.

2) 개정개요

2001.1.1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 2%의 5배인 10%로 중과세 하던 제도를 폐지하면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2001.1.1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함)에 대하여도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적용례를 두었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4내지 제46조의11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8.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

1) 배 경

주민세소득할 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서는 7.5%로 규정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 2000.12.31까지 한시적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왔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0%로 적용하게 된 것은 정부의 GNP의 5% 교육재정 확보계획에 따라 시·도세 총액의 2.6%를 교육재정으로 부담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에 대한 지방재정보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도세 총액의 2.6%를 부담기로 하였던 시·도의 교육비 부담이 2001년부터는 오히려 3.6%로 증가하였고(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의원입법으로 개정), 광역시 및 경기도의 중등교원 인건비 10%부담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7.5%로 환원하지 못하고 2001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10%로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본문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주민세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는 시세이므로 교육재정 부담확대재원 보전이 가능하나 도의 경우 시·군세이므로 교육재정 지원주체와 주민세수입이 증가하는 시·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나, 1996년도의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인상할 때에 이미 세율인상에 따른 도와 시·군간의 재원배분이 이루어진 바 있고, 이번 세율조정은 부칙으로 계속 운영되어 오던 세율을 본칙에 반영한 것이며, 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배분시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지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개정개요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부칙에서 10%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본칙에 반영하여 7.5%에서 10%로 인상조정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 - 법제176조

주민세소득할 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를 개정하여 다음 <표 4>와 같이 조정되었다.

<표 4>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

개정전		개정후	
구 분	세 율	구 분	세 율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9.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

1) 배 경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이나 세목명칭이 『농지세』로 되어 있어 세목명칭과 조세성격이 맞지 않는 점이 있고, 농지세 과세대상도 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벼와 과수·채소류 등으로 되어 있어 수경재배·시설재배 등은 같은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면서도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어 조세 불형평의 문제점이 있으며, 취약한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충을 위하여 국세가 과세되는 시설재배¹⁵⁾·수경재배¹⁶⁾ 등은 농지세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1차산업 소득인 축산·산림·어업소득 등도 농지세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농지세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조세로 지방세중 유일한 소득과세이며, '62년 지방세로 이양 당시에는 지방세중 38.2%를 차지하는 중요세원이었으나, 농민생활 안정 및 농업지원정책의 일환으로 '91년까지 280만원이던 기초공제액을 '92년부터 56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점진적인 농업인구의 감소 등으로 지방세중 비중이 가장 낮고(0.023%), 농지세 납세농가도 전체농가(1,480천호)의 1.5%인 21천호로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농지세를 명실공히 지방세중 소득세로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우선 소득세 과세 대상인 수경재배 등 시설작물 재배소득을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이전하면서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개칭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축산·산림·어업소득의 지방세 흡수문제도 계속 검토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다.

2) 개정개요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였고,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¹⁷⁾에 해당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였다. 지

15) 시설재배라 함은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버섯 및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16) 수경재배라 함은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과 양분을 토양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양분을 적당한 비율로 물에 용해시킨 배양액을 만들어 산소와 함께 공급하면서 재배하는 방법. 주요재배작물로는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 상추, 썩갓 등 잎채소류, 화훼류 등 다양하다.

방세법시행령에서 지방세법의 위임을 받아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을 농업중 작물재배업¹⁸⁾의 분류에 해당하는 작물(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은 벼에 한함)로 정함으로써 종전에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나열된 것만 과세하던 것을 농업중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모든 작물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농업의 분류는 아래 <표 5>와 같다. 앞으로 농업소득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이번 지방세법 개정시는 농업소득세 관련 조항을 전문개정 하였으며, 종전의 농지세와의 농업소득세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에 속하는 항목

- 대분류 : 농업 및 임업
- 중분류 : 농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예 시
작물 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 벼, 보리, 밀, 수수 - 감자, 고구마 - 메밀 - 옥수수, 콩, 녹두
		채소작물	- 풋마늘, 풋고추 - 파, 양파 - 아스파라거스 - 참외, 수박, 멜론 - 잎 및 열매채소
	화훼작물	- 정원수 - 조원용 풀 - 절화용 화초 - 분재	

- 17) 농업에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조정수식재 및 관리,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 18)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벼,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도 여기에 포함되며 그 종류에 따라 해당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 화초, 과수종자 - 채소, 화초, 과수묘목 - 버섯종균 - 접수 및 삽수 묘목 - 화초 종근 - 벼 모판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과실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 호도, 대추 - 복숭아, 포도, 감귤 - 견과류 채취 - 바나나 - 키위, 망고스틴 - 버찌, 무화과
		음료용 및 향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 생강, 정향, 녹차 - 커피, 코코아
작물 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 호프 - 섬유작물 - 비 및 솔 제조용작물 - 유지작물 - 조물재료 작물
	시설작물 재배업	콩나물 재배업	- 콩나물 재배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재배업	- 시설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 는 산업활동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 재배 - 작물배양 재배 - 향신용작물 시설재배 - 공예작물 시설재배 - 음료용작물 시설재배 	

3) 개정조문 및 해설

○ 농업소득의 정의 및 과세대상 - 법제197조, 영제147조

농업소득세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받

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시행령 제1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을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식량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은 비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모든 작물의 재배로 인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곡물 및 기타작물재배업의 경우는 비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법 제197조>

제197조(定義) 이 절에서 “農業所得”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農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物(이하 이 절에서 “作物”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납세의무자 등 - 법제198조, 영제148조

납세의무자는 종전 농지세에서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로 하던 것을 농업소득세에서는 “농업소득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농업소득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였으며, 농지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¹⁹⁾하였다.

○ 과세기간 - 법제199조

농업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종전과 같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종전의 농지세에서는 농지세 通則 뒷부분에 있던 조문을 앞부분으로 이동하여 정리하였다.

○ 농업소득세 비과세 - 법제200조 내지 제203조, 영제150조, 규칙제83조

농업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세 비과세 규정과 같으나,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도 비과세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농업소득세 비과세신

19) 농지임대소득은 농지를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농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며, 국세인 소득세(임대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청에 대한 규정도 종전의 농지세의 규정과 같다.

○ 과세표준 - 법제204조, 영제152조·제153조, 규칙제84조

농업소득세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중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기초공제액 및 비과세·감면소득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전의 농지세 규정과 다른 점은 없으나, 개정전 지방세법 제206조 내지 제209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1개조문으로 정리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소득세에서의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등급결정, 열람 및 심사청구 등은 종전의 농지세 규정과 같으나, 필요경비의 종류와 그 적용에 있어 달라진 사항이 있으므로 적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종전의 '시설비'를 '작물재배 관련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로 개정하였다. 작물재배시설이라 함은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시설(생육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작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할 시설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육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수, 차나무 등의 경우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둘째, '농기계유지관리비'를 '농기계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로 개정하였다. 농기계의 감가상각비의 경우도 재배시설의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셋째, '자본용역비'를 '차입금이자'로 개정하였다. 차입금이자란 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를 말하며,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불산입되는 이자는 제외한다.

넷째, '작물재배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 및 훈련비'를 필요경비에 추가하였다.

다섯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필요경비에 추가하였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각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 세율, 세액의 계산 등 - 법제205조 내지 제207조, 규칙제87조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종전의 농지세의 세율과 변동이 없으며, 농지소득세액의 계산 및 안분 및 소액부징수(2,000원 미만)에 대한 내용도 변동이 없다.

○ 신고·납부, 결정·징수 - 법제208조·제209조, 영제154조·제155조, 규칙제89조

농업소득세에서는 종전의 농지세에서 규정하고 있던 중간신고 및 중간예납제도와 특별징수제도를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신고와 납부에 번거로움만 초래하여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시장·군수는 이를 2월말까지 확정하여 초과납부 세액은 환부하고, 부족세액은 징수하면 되는 것이며, 기타 2이상의 시·군에서 농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종전의 농지세의 경우와 같다.

○ 수시부과, 변경신고, 과세대장 등 - 법제210조 내지 제212조, 영제156조·제157조, 규칙제90조·제91조

농업소득세의 수시부과 및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농업소득세과세대장 등의 규정은 종전의 농지세 규정과 같으나, 시설재배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 농지소득조사위원회 - 법제213조, 영제158조 내지 제160조, 규칙제92조·제93조
종전의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세조사위원회로 하였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과 같다.

○ 소득세의 부과금지 - 지방세법 제214조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농지세에서는 법인이 납부한 농지세는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인세법 제5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표 6> 농지세와 농업소득세의 비교

구 분	농지세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에서 농작물(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소득이 있는 자 ※ 시행령상의 과세대상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으로 하고, 작물재배업중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의 경우는 벼에 한정 - 소득세 과세대상인 시설작물재배소득을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 ※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 조합의 농지소득 · 개간, 매립·간척지 10년이내(황무지는 5년이내) · 학교, 고아원, 양로원, 수녀원, 사찰, 교회의 실험실습 및 자가소비용 · 산림용 묘포지에서 생긴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세와 같음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비과세소득+감면소득)-기초공제액(56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세와 같음

세율	<p><과세표준> <세율></p> <p>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2만원+400만원</p> <p>1천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72만원+1천만원</p> <p>4천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672만원+4천만원</p> <p>8천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p> <p>초과금액의 100분의 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세와 같음
납기 및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예납(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가: 1월~7월(납기 8.16~8.31) - 2가: 8월~12월(납기 12.16~12.31) •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해 1월말까지 • 결정과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간중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해 2월말까지 - 결정세액이 자진납부세액과 다를 경우 부과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실익이 없고, 중간예납을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간예납 제도 폐지 • 신고와 자진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해 1월말까지 • 결정과 징수 : 농지세와 같음
특별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가조직한 단체(납세조합)가 농지세 특별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특별징수 제도 폐지
수시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거나 해외 거주를 위해 출국할 경우 • 수시부과를 하지 않으면 농지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세와 같음
농지의 변동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소유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및 재배시설의 소유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 부여
소액부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세와 같음
농지조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소득금액, 기타 농지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농지조사위원회를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조사 위원회로 변경하여 존치

소득세 등의 부과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법인세에서 농지세를 공제하는 규정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농업소득세에서는 관련규정 삭제
-------------	--	---

10. 지방세감면규정 전면 재조정

1) 배 경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0.12.31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다시 조정하고, 지방세 감면규모가 커²⁰⁾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축소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번 지방세법 개정시 이를 축소 조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제5장 감면규정의 각 조문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조문을 이동 조정하였다.

이번 지방세 감면규정의 조정은

농어민·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계층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는 계속 존치하여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을 지원하고,

고유업무에 대한 감면을 법령상의 사업으로 축소하는 등 포괄적 감면대상을 특정화 또는 개별화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며, 목적세(사업소세)는 최대한 과세전환하여 과세형평과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정책상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도 최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여 지방행정 서비스에 최소한의 비용부담((minimum tax)을 실현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추가 경감가능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자주재정 책임(fiscal

20) '99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규모는 2조 1,170억원으로 지방세 총액 18조 5,861억원의 11.4%에 이르며, 지방세법에 의한 것이 130종, 10,392억원(49.1%) 감면조례에 의한 것이 78종, 8,191억원(38.7%),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27종, 2,587억원(12.2%)이다.

accountability)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2) 감면내용 조정개요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감면내용이 조정된 사항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번에 개정된 과세면제 및 감면규정은 2003.12.31까지 적용하게 된다.

- ① 농어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은 현행 수준 존치
- ② 특정 법인·단체에 대한 감면 축소
 - 가.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영업초생산조합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감면축소
 -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 25% 경감
 - 나. 농업회사법인, 영농·영어조합법인도 일반농민 수준으로 감면 축소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전액면제 → 50% 경감
 - 다. 한국토지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 등은 상당한 이익발생 법인이므로 감면 축소
 - 종합토지세 50% 경감 → 25% 경감
 - 라. 직업훈련시설용 부동산 감면 축소
 - 취득세·등록세 전액면제 → 50% 경감
 - 마. 장기간 감면해온 지적공사 등에 대한 과세전환
 - 지적공사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50%경감 → 전액 과세전환
 -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 전액 과세전환
- ③ 국세(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사업에 대한 감면 축소
 -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 축소
 - 사업용 가스관의 취득세·재산세 전액면제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특별·광역시 지역은 2002년까지만 감면)
 - ※ 한국가스공사는 민영화될 때까지 전액면제
- ④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감면율을 정할 수 있도록 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회사업
 - 취득세·등록세 전액면제 → 50% 경감하되,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⑤ 반대급부적 성격의 응익세로서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감면 축소
 - 가. 사업소세 50% 경감 → 과세전환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
 - 나. 사업소세 전액면제 → 전액 과세전환
 - 농업회사법인 - 영농·영어조합법인
- ⑥ 신설 법인에 대한 감면
 - 국립암센터(2000년말 개원예정)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전액면제
- ⑦ 법인해산(폐지) 등에 따른 감면 폐지 및 정리
 - 가. 농지개발조합이 2000.1.1 농업기반공사에 통합되므로 규정 정리
 - 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심사평가원으로 변경(2000.7.1)됨에 따른 정비
 - 나. ASEM 회의장에 대한 감면 폐지
 - ※ 2000.12.31이전에 신·증축한 부동산에 대해 2001.12.31까지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경감토록 함.
- ⑧ 건설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지원 등
 - 가. 대도시에 소재하는 모회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시 등록세 중과 제외
 - 나. 별도법인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하여 모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 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이행을 위하여 분양계약된 주거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3) 개정조문 및 해설

○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법 제261조 내지 제295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규정의 각조문별 개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개정된 각 조문의 이동내역에 대한 요약과 법인별 감면 내용을 별첨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11. 포괄위임의 소지가 있는 규정의 정비

1) 배 경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방세법의 규정이 과도하게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금지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청원 및 위헌소원 제기가 증가²¹⁾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방세법에서의 위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중 조세법률주의 위배 또는 포괄위임 등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검토하여 개선하였다.

2) 개정개요

지방세법중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은 이번에 전문개정이 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규정중 하위법령에 포괄위임²²⁾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가능한 한 포괄위임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하였다.

21) 2000. 4월말 현재 지방세법중 헌법소원 청구사건 중 미제사건 관련조문은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제3호등 15건 9개조문이다.

22) 개정된 지방세법령에서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문이 195조문,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조문이 24조문, 시행령에서 시행규칙 위임한 조문이 62개조문 등이 있었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지방세법중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포괄위임의 소지가 있는 아래 18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 ① 법제26조의2 제1항 :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 →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11조 제1항)
- ② 법제26조의 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납세의무자의 사망·질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11조 제4항)
- ③ 법제104조제2호의4 :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 ④ 법제104조제4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건축물 및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75조의2, 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8)
- ⑤ 법제104조제7호의3 :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75조의3, 시행규칙 제40조의7)
- ⑥ 법제138조제1항 단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으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102조 제1항)
- ⑦ 법제138조제1항제4호 :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

- 기”→ “대도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⑧ 법제160조제2항 : 개정전 법제161조제2항에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124조)
- ⑨ 법제163제2항제6호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면허의 단순한 표시 변경 등 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126조의2)
- ⑩ 법제180조제2호 단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131조)
- ⑪ 법제184조제9호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136조의3)
- ⑫ 법제188조제1항제2호(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142조의2)
- ⑬ 법제188조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으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142조의2)
- ⑭ 법제196조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146조)
- ⑮ 법제196조의5제3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의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와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의 시장”으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146조의5)

제2항)

- ①⑥ 법제201조제1항제3호 : 개정전 법제200조제1항제3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소득”→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소득”으로
- ①⑦ 법제234조의15제2항 본문 : “대통령령으로”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 ①⑧ 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공장용지·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으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12. 건축물에 대한 용어 재정립 및 건축물의 범위 조정

1) 배 경

개정전의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위임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건축물을 취득한다는 것은 건물·구축물·부대설비를 포함한 일체를 취득하는 것이지 이를 각각 분리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상 건축물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어 정의의 차이로 혼란이 있어 이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중 시설물의 범위를 시설의 종류별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2) 개정개요

이번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建築物(이와 유사한 형태의 建築物을 포함한다)과 土地에 정착하거나 地下 또는 다른 構造物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종전의 대수선과 특수한 부대설비 설치를 개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에 있어 건축물의 개념이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종전에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나열하던 것을 법에서 과세대상의 대강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것을 시행령에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 건축물의 개념정의 - 법제104조제4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大統領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²³⁾과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시설, 접안시설 등의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 되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과세근거를 두고 있다.

<법 제104조의 제4호>

4. 建築物：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建築物(이와 유사한 형태의 建築物을 포함한다)과 土地에 정착하거나 地下 또는 다른 構造物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종전의 특수한 부대설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종전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개정 지방세법상의 개수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 건축의 개념정의 - 법제104조제9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이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이번 개정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을 지방세법상의 건축으로 인용하면서 종전의 증축 및 개축의 정의를 삭제하였다.

<법 제104조의 제9호>

9. 建築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建築을 말한다.

○ 개수의 개념 도입 - 법제104조제10호

이번 지방세법 개정시 '개수'라는 정의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종전 지방세법에서 개축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대수선과 시설물(승강기, 20kW 이상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 에어컨,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변전·배전시설 등 종전의 특수한 부대설비)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법 제104조의 제10호>

10. 改修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大修繕과 建築物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물의 범위 - 영제75조의2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시설물에 대하여 각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열수송관,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방송중계탑 및 무선기지국시설물(전과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등이 과세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추가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거 200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였다.

<영 제75조2>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폴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수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전과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재산세에서의 건축물 - 법제180조제2호, 영제131조

개정전과 마찬가지로 재산세에서의 건축물 정의도 취득세의 건축물 정의를 인용하여 과세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에만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포함)과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의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모두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전 인텔리전트 빌딩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면서도 재산세 과세시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모순을 이번 개정으로 해결되었다.

<법 제180조의 제2호>

2. 建築物

第104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을 말한다. 다만, 住宅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추정근거 규정 신설

1) 배 경

비영리사업자 또는 공공법인 등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1년 또는 3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나, 비영리사업자 등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사용을 개시하여 일시적·형식적으로 사용하다가 매각 또는 타용도로 전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정 규정이 없어 공평과세를 저해²⁴⁾하고 있음에 따라 비영리사업자 또는 공공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일부부터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타용도 전용할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보완하였다.

2) 개정개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과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규정에서 취득 부동산의 사용일부부터 기산하여 그 용도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하도록 규정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중 추정규정이 신설된 조문은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제261조·제266조·제268조·제271조·제272조·제273조·제276조·제277조·제278조·제279조·제280조·제286조·제287조·제288조제289조 등이다.

24) 상가건물을 취득한 후 유치원 또는 유아원용으로 약 1개월간 사용하다가 매각하거나 상가용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추정이 불가하므로 과세의 형평성을 상실하게 됨.

14. 기타 지방세법상 미비점 개선·보완사항

지방세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에 대하여는 각 조문별로 그 개정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정비(법제4조)

중전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 위임하거나 그 관할구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행세의 경우 관할구역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관할구역내는 물론, 관할구역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권한위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2) 증가산금 적용대상 체납액 상향조정(법제27조, 영제13조)

지방세 증가산금 제도는 '88.12.26. 개정된 것으로 그 동안 과세표준 및 세액 단위가 상승하였음에도 조정되지 않아 증가산금 징수에 따른 인력·예산·시간 등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이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시·도의 건의를 수용하고, 국세(50만원)와 지방세의 증가산금 적용 기준금액이 서로 달라 불형평하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지방세 증가산금 적용제외대상 금액을 중전의 10만원미만에서 30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개정된 증가산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3) 가산세 적용제외 대상 근거규정 신설(법제27조의2)

지방세의 신고납부 불이행 등으로 부과되는 가산세의 본세의 세목²⁵⁾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체납된 경우에는 가산세 과세대

상에서 제외²⁶⁾하도록 하였으며, 가산세 면제는 직권으로도 가능하나, 과세관청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가산세 면제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그 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영 제13조의3의에서 신청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다.

가산세의 경우는 부칙에서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2001.1.1 이후 가산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면 될 것이다.

4) 결손처분 취소범위의 명확화(법제30조의3)

지방세 체납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미비되어 있어 세정운영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결손처분을 한 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새로이 생겼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5) 지방교육세의 이의신청(법제73조)

지방교육세가 도세로 신설됨에 따라 도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의 이의신청은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의 이의신청은 시장·군수에게 하도록 규정하였다.

6) 재개발사업등 승계조합원에 대한 과세의 합리적 개선(법제109조제3항)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환지에 대한 규정을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

25) 예를 들면 취득세의 가산세는 취득세가 된다.

26) 국세의 경우도 국세기본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본세에 포함하며,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되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계획등은 계속하여 진행중에 있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4조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나, 사업인가 후 조합원 자격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거가 없어 승계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승계에 일부 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을 전액 과세하게 됨에 따라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승계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조합원 자격승계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였다.

7)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규정신설(법제111조제6항·제8항)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 개정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지방세법에 명시하였으며, 시행령 제81조의2에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8) 면허세 관련규정의 정비(법제160조·제161조·제165조·제167조, 영제124조·제126조의2·제127조·129조, 별표)

개정 지방세법 제160조에서는 종전의 지방세법에서 면허로 정의하고 있는 행정처분과 행정행위는 강학상 또는 실정법상의 용어와 상이할 수 있어 부적절한 점이 있으므로 면허의 개념을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로 재정립하였으며,

법 제161조에서는 면허세 납세의무자를 정하면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였고, 면허를 할 때 1회만 면허세를 과세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서 면허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법 제165조에서는 신규면허 및 변경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신고납부제도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 이는 개정전에도 신규면허와 변경면허의 경우 면허세의 납세여부를 확인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법상의 규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부과하는 면허세는 종전과 같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면허세 납세지를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로, 영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주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법 제167조에서는 면허세 납부후 면허신청 철회 등에 따라 면허세를 환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는 환부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영 제126조의2에서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점용하는 하천·공유수면의 점용의 경우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중인 면허 및 1년이상 휴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1년이상 휴업으로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제3항에 의거 면허부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지방세법시행령 별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중 일부를 개정하여 도로·하천·공원 등의 50㎡이하 점용허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소방공사설비공사업(제3종),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원양어업, 연안어업(제1종~제4종),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소분·판매업중 식품자동판매기업,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등(제1종~제4종), 지적법에 의한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제4종) 등의 면허를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9) 주민세 소득세할 과표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법제172조)

소득세할주민세액을 확정신고한 후 확정신고세액을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에

과세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주민세를 과세함에 따라 소득세의 납부여부에 따라 주민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주민세소득세할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였다.

10) 신고납부 기한 등의 연장사유 추가(영제11조)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납부 등을 연장하는 사유에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를 추가하였으며, 영제1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직권에 의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외에 납세의무자에 의한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11)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시기 등 조정(영제73조)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취득의 시기를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되어 있어 계약후 잔금지급전 또는 잔금지급후 즉시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됨에 따라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후 30일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으며,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도 증여계약후 30일이내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12) 유흥주점영업 등에 대한 중과기준 개선 등(영제84조의3)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중과기준 면적을 두고, 적용상 문제가 제기되는 내용을 정비 보완하였다. 무도유흥주점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로서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고, 립살롱 및 요정은 영업장의 면적이

65㎡를 초과하는 것으로 객실 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하였다. 이 경우 유흥접객원 종사여부는 상시 고용이외의 것도 포함된다. 또 '99.12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증기탕에 대한 근거가 삭제 되었으므로 「증기탕」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3) 대도시내 법인 중과규정의 정비(영제101조·제102조)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법인등기에 대한 안분기준이 없어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모두 중과하였으나, 이번엔 시행령을 개정하여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하도록 하였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중과하도록 하였다.

14)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추가(영제146조의2)

자동차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제시기간에 한함)를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제시기간중에는 자동차세가 비과세되도록 함에 따라 제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2000년에 제시되어 2001년에 판매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2000년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제시자동차에 한해서 50%경감하고, 2001년은 제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비과세하면 된다.

15)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규정 정비(영제195조, 규칙제10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되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새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의 3가지로 분류되고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모든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포함)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로 개정하였다.

다만,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는 동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칙에서 동지구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계속 적용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16) 사업소세 비과세사업자 추가(영제209조)

사업소세가 비과세 되는 사업자로서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추가하였으며, 종전에 비영리사업자(시행령 제79조)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유공자등단 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 광복회 · 4 · 19혁명부상자회 · 4 · 19혁명희생자유족회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을 비영리사업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소세 비과세사업자로 변경하였다.

17) 지역개발세 비과세대상 합리적 조정(영제216조)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 지하수중 기타용수 과세대상에서 종전에는 지하수법 제7조 제1항단서 및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동법에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의 것과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의 경우가 해당되어 기타용수의 경우는 1일 양수능력 100톤미만은 지역개발세가 비과세되어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을 위한 과세취지

와 맞지 않는다는 관련부처의 지적과 시·도의 건의에 따라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한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의 연장(규칙제36조의3)

과세전적심사의 청구기간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일 이내로, 결정기간도 청구서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일이내로 각각 연장하였다.

19) 자동차 이전등록시 등록세 납부제도 보완(규칙제50조)

자동차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시·도내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종전의 지방세법령에서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시는 사용본거지 자치단체에서 OCR납부서를 발급 받아 은행 등에 납부하고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타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번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0조를 개정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시·도내에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제53호의2 서식에 의하여 수기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동일 시·도내에서는 어디서나 자동차이전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 경주·마권세의 안분기간 조정(규칙제57조)

시행령 제105조의2 규정에 의거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에 대한 경주·마권세액의 안분에 있어 경륜·경정·경마장이 신설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에는 경륜·경정·경마장 소재지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50%를 안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시 신설 경륜·경정·경마장 소재지에 대한 시설재원의 투자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다.

21)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규칙제115조)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써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공장의 범위를 5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하여 대도시외로의 공장이전이 촉진되도록 하였다.

III. 맺음말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납세자 위주의 세제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세제의 형평성·중립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이번 세제개편 내용 중 무엇보다도 자동차 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자동차세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재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자동차 관련세제를 개편함으로써 현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대한 수년간의 논란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시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지방세 과세면제 및 감면범위의 축소 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은 하였음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2001년 시행 개정지방세법령 해설이 독자 여러분들의 지방세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소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지방세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별첨 1>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규정 조문 변동표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제1절 농어민지원을 감면	제1절 농어업 지원		
§261 ①·②	현행과 같음		
§262 ①·②·③	현행과 같음		
§263 ①·②·③	현행과 같음		
§264 ①·②	현행과 같음		
§265 ①<삭제> ②	§265		○ 농어촌 空家
§266 ①·②·③·④	현행과 같음		
⑤	①항에 통합	⑤항에는 §290 ②1·2·4·5호, ③1·2·7·8호를 이관	○ 농협·수협· 산림조합등
⑥	현행과 같음		
	⑦<신설>	⑦항에는 §267 ④ ·⑤항을 이관	
§267 ①·②·③ ④·⑤	현행과 같음 §266⑦	④·⑤<삭제>	
제2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	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268 ①	§268		
②	<삭제>		○ 령§146의2에 규정, 비과세
§269 ①·②·③· ④	현행과 같음		
⑤	§281 ①·②·③	⑤항에는 대한주택 보증(주) 감면신설	○ 주택보증주식 회사 ○ 도시가스사업자
⑥	§286 ③3호	⑥<삭제>	
⑦	<삭제>		○ 에너지관리공단
⑧	§286 ①	⑧<삭제>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⑨	§272③	⑨ <삭제>	○신협·마을금고
⑩	§272④	⑩ <삭제>	○신협연합회는 폐지로 삭제
§270 ①	현행과 같음		
②	②		○근로복지공단 · 산재의료 관리원→ §278③으로
③	현행과 같음		
	④<신설>	④ 항에는 국가유공단체 감면신설	○령§79①7호 를 이관
§271	§271①		
	②<신설>	② 항에는, 290② 12 호, §291②13호를 이관 통합	○한국장애인고 용 촉진공단
	③<신설>	③ 항에는 §290 ①5호를 이관	○한국갱생보호 공단 등
§272	§283③		
	①<신설>	① 항에는§284,§290 ①6호를 이관	○독립기념관 ○산업체부설학교
	②<신설>	② 항에는§269⑨,§2 90①14호를 이관	○새마을운동 조직
	③<신설>	③ 항에는 § 2 6 9 ⑨, §290②9·10호, ③ 5·6호를 이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④<신설>	④ 항에는 § 2 6 9 ⑩ 항을 이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 합회
§273①	현행과 같음	○현행 조문에 §291①7, ②12호 를 이관 통합	○국민연금관리 공단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조문에 § 2 9 1 ① 2 · 3 호, ② 7 · 8호를 이관 통합	○공무원·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③·⑤ *④<삭제>	<삭제>	③항에는 국민건강보 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감면신설	○ 의료보험조합 과 국민의료 보험관리공단 대체
⑥	④		
⑦	§288③	⑦ <삭제>	
⑧	⑤	⑧ <삭제>	
제3절 지역균형개발을 위 한 감면	제3절 지역균형개발 등 의 지원		
§274①·②·③	현행과 같음		
§275①·②	현행과 같음		
§276①·②	현행과 같음		
③	④		
④	③		
§277①·②	현행과 같음		
§278①	§289①	① 항에는 § 283 조 를 이관	
②	§289②	②항에는 §290② 7호, ③4호를 이관	
③	§289③	③항에는§270② 항을 이관	
	④<신설>	④항에는§281① 항을 이관	
	⑤<신설>	⑤ 항에는 § 290 ④ 2·4호, § 291 ① 1·5호 ②5·10호 를 이관 통합	
§279①·②	§289⑤	§ 279 조에는 § 280 ⑦항을 이관	
제4절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감면			
§280①·②	§280①에 통합	②항에는 ⑧항을 이관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③<삭제>	③<신설>	③항에는 ⑨항을 이관	
④·⑤·⑥	현행과 같음		
⑦	§279	⑦항 내용신설	○조례로 추가 감면
⑧	②	⑧<삭제>	
⑨	③	⑨<삭제>	
§281①	§278④	① 항 에 는 § 2 6 9 ⑤ 항을 이관	○ 한국가스공사
②	§283①	② 항 에 는 § 2 6 9 ⑤ 항을 이관	○ 도시가스사업 자
	③<신설>	③ 항 내용신설	○ 조례로 추가 감면
§282	현행과 같음		
§283	§278①	① 항 에 는 § 2 8 1 ② 항을 이관	
	②<신설>	② 프로젝트별 별도법 인 감면	○ 건설 프로젝트 별 별도법인 감면신설
	③<신설>	③ 항 에 는 § 2 7 2 조 이관	○ 신문·통신업
§284	§272①2호	① 항 에 는 § 2 8 7 조 를 이관	
	②<신설>	② 항 에 는 § 2 8 9 ① 항을 이관	
	③<신설>	③ 항 에 는 § 2 8 9 ② 항을 이관	
	④<신설>	④ 항 에 는 § 2 8 8 조 를 이관	
§285 ①·②·③	현행과 같음		
	제4절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286<삭제>	§286①<신설>	① 항 에 는 § 2 6 9 ⑧ 항을 이관	

2001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매설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286② <신설>	② 항에는 §290④3, §291①4, ②9호를 이관
	§286③ <신설>	③ 항에는 §269⑥, §290②11, ③10호를 이관
제5절 항공기등에 대한 감면		
§287	§284①	
	①<신설>	① 항에는 §290① 2·3·4·15호를 이관
	②<신설>	② 항에는 §290① 17호를 이관
§288	§284④	
	①<신설>	① 항에는 §290① 1·7 - 13호를 이관
	②<신설>	② 항에는 §290① 18호를 이관
	③<신설>	③ 항에는 §273⑦ 항을 이관
	제5절 공공사업 등 지원	
§289①	§284②	① 항에는 §278① 항을 이관
②	§284③	② 항에는 §278② 항을 이관
③	§289④	③ 항에는 §278③ 항을 이관
	④<신설>	④ 항에는 §289③ 항을 이관
	⑤<신설>	⑤ 항에는 §279①·②항을 이관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290	§290④1호, §291①6, ②11호를 이관 통합		
①1호	§288①1호		
①2-4호	§287①1-3호		
①5호	§271③		
①6호	§272①1호		
①7-13호	§288①2-8호		
①14호	§272②		
①15호	§287①4호		
①16호	<삭제>		○ 지방의료공사
①17호	§287②		
①18호	§288②		
②1-5호	§266⑤		○ 각 협동조합
②6<삭제>			
②7호	§278②		
②8호	§273③		
②9호	§272③		
②10호	§272③		
②11호	§286③		
②12호	§271②		
③1·2호	§266⑤		
③3<삭제>			
③4호	§278②		
③5호	§272③		
③6호	§272③		
③7-8	§266⑤		
③9<삭제>			
③10호	§286③		
④1호	§290		
④2호	§278⑤		
④3호	§286②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④4호	§278⑤		
	제6절 보 칙		
§291		§291조(내용신설)	○ 감면제외 대상
①1호	§278⑤		
①2-3호	§273②		
①4호	§286②		
①5호	§278⑤		
①6호	§290		
①7호	§273①		
①8<삭제>			
②1-3<삭제>			
②4호	§273③		
②5호	§278⑤		
②6<삭제>			
②7호	§273②		
②8호	§273②		
②9호	§286②		
②10호	§278⑤		
②11호	§290		
②12호	§273①		
②13호	§271②		
②14호	<삭제>		○ 지적공사
제7절 보 칙			
§292	현행과 같음		
§293	현행과 같음		
§294	현행과 같음		
§295	현행과 같음		

<별첨 2>

법인·단체별 지방세 과세면제 및 감면현황

※ 작성순서 : 가나다순, 용례 : ○→100% 면제, △→ 50% 경감,

법인·단체명	감 면 내 용	법조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도 시 계획세	공 동 시설세	사 업 소 세
기술신용보증기금	· 보증업무용 부동산	280⑦ 개)279	△ △	△ △					
	· 기부채납 공공시설물과 부속토지	279① 개)삭제	- -	- -	○ -	○ -	○ -	○ -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282 개)삭제	○ ○	○ ○	○ ○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후생 복지사업용 부동산	273② 개)273②f	○ ○	○ ○	○ ○	○ ○			△ (2f)
	· 국가 및 자치단체와 교환 부동산	273⑥ 개)273④	○ ○	○ ○					
	· 기금증식 등을 위한 부동산	291⑬3 291⑫8 개)273⑫2	△ - △	△ - △	△ - △	△ -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신 규	· 보험심사업무용 부동산 - 의료보험조합 대체(2000.7.1)	신)273③	○	○	△	△			
건설프로젝트별 별도법인 ※ 신 규	· 출자건설업체로 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신)283②	○	○					
	· 대도시 법인이 대도시내에 법인설립		-	중 과 제 외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수익사업용 제외)	269③ 개)286①	△ △	△ △					
경찰공제회	· 국가 등과 부동산 교환	273⑥ 개)273④	○ ○	○ ○					
광 복 회 ※ 경 제79①7호	· 취득· 소유 부동산	개)270④	○	○	○	○	○	○	
근로복지공단	· 의료 및 재활사업용 재산 - 직업재활· 의료· 복지 휴양용 부동산	270② 개)278③	○ ○	○ ○	○ ○	○ ○			
	-기타 업무용 부동산		○	○	△	△			
국립공원관리공단	·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	290④1 291①6 291②11 개)290	○ △ - △	○ △ - △	△ △ △	△ △ △			
국립대학교병원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290①15 개)287①#	○ ○	○ ○	○ ○	○ ○	○ ○	○ ○	
국립암센터 ※신규(2000. 3. 성립)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신)287① 5	○	○	○	○	○	○	

2001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

※ 작성순서 : 가나다순, 용례 : ○→100% 면제, △→ 50% 경감

법인·단체명	감면내용	법조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국민연금관리공단	· 복지사업용 부동산	273① 개)273①1	○	○	○	○			△ (과)
	· 기타 국민연금 사업용 부동산	291①7 291②12 개)273①2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	· 건강보험 업무용 부동산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체 (2000.7.1)	신)273③	○	○	△	△			
군인공제회	· 회원용 공동주택(85㎡ 이하) 건설용 부동산	273⑧ 개)273⑤	△	△					
노동조합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부동산 -주의사업용 제외	290②7 290③4 개)278②	○	-	○	○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 및 교육 훈련시설 용 부동산	266① 개) "	△	△	△	△			
농수산물유통자회사	· 유통 및 교육 훈련시설 용 부동산	266⑤ 개)266①	○	○	△	△			
농업기반공사	· 농지관리기금융자 담보 물등기 및 전업·은퇴 농가의 농지 등 임차 등기	264② 개) "	-	○					
	· 농업기반사업용 토지· 건축물·시설물	266② 개) "	○	○	○	○			
농업회사 법인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267④ 개)266⑦	○	○	○	○			○ (과)
	· 법인등기	267⑤ 개)266⑦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 농어민융자 담보물 등기 (중앙회 포함)	264① 개) "	-	○					
	· 사업소세 감면	266⑥ 개) "	-	-	-	-	-	-	△ △
	· 일선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임대용 제외	290②1 290③1 개)266⑤	○	○	○	○			

※ 작성순서 : 가나다순, 용례 : ○→100% 면제, △→ 50% 경감

법인·단체명	감 면 내 용	법조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토세	도 시 계획세	공 동 시설세	사 업 소 세
※ 중 앙 회	·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등 부동산 ※ 조례로 초과 규정	266③ 계)266③	△ △	△ △	△ △	△ △			
	· 중앙회의 회원 교육· 지도·지원·공동이용 시설용 부동산 (임대용 제외)	266④ 계)266④1	△ △	△ △					
	· 신용사업용 부동산	266④ 계)266④2	△ 25%	△ 25%					
농지개발조합	※ 농업기반공사(현 법령(2000. 7. 1))	267④ 계) 삭 제	○ -	○ -	○ -	○ -	- -	- -	○ -
독립기념관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부동산	290①6 계)272①1	○ ○	○ ○	○ ○	○ ○	○ ○	○ ○	-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부동산	290①2 계)287①1	○ ○	○ ○	○ ○	○ ○	○ ○	○ ○	
대한결핵협회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부동산	290①4 계)287①3	○ ○	○ ○	○ ○	○ ○	○ ○	○ ○	
대한평업진흥공사	· 기능공훈련등 위탁교육 시설용 부동산	285③ 계) "	- -	- -	△ △	△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부동산	290①13 계)288①8	○ ○	○ ○	○ ○	○ ○	○ ○	○ ○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 취득· 소유 부동산 ※ 령 제79①7호	계)270④	○	○	○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포함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부동산	290①7 계)288①2	○ ○	○ ○	○ ○	○ ○	○ ○	○ ○	
대한석탄공사	· 광업권 및 광업시설	285② 계) "	△ △	△ △					
대한적십자사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부동산	290①1 계)288①1	○ ○	○ ○	○ ○	○ ○	○ ○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회원용 공동주택(85㎡ 이하) 건설용 부동산	273⑧ 계)273⑤	△ △	△ △					
대한교원공제회	· 회원용 공동주택(85㎡ 이하) 건설용 부동산	273⑧ 계)273⑤	△ △	△ △					

2001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

※ 작성순서 : 가나다순, 용례 : ○→100% 면제, △→ 50% 경감

법인·단체명	감면내용	법조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대한주택공사	· 소규모 임대공동주택(60㎡이하)용 부동산 ※ 4년내 미착공시 추정 - §269③	269① 계) "	○ ○	○ ○	△ △	△ △			
	· 소규모 분양주택용 부동산 ※ 4년내 미착공시 추정 - §269③	269② 계) "	○ ○	○ ○					
	· 주한미군 임대주택용 부동산	269④ 계) "	○ ○	○ ○	△ △	△ △			
	· 제3자에게 공급할 일시 취득 부동산	278① 계)289①	○ ○	○ ○	- -	△ 25%			
	·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및 부속토지	279① 계)289⑤	- -	- -	○ ○	○ ○	○ ○	○ ○	
대한주택보증(주) ※ 신규	· 보증이행을 위해 일시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 (부대복리시설 등 제외)	신)269⑤	○	○					
보훈병원	· 보훈병원에 대하여	270③ 계) "	○ ○	○ ○	○ ○	○ ○	○ ○	○ ○	○ ○
사내 근로복지기금	· 설립 및 변경 등기	281①	-	○					
		계)278④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후생 복지사업용 부동산	273② 계)273②1	○ ○	○ ○	○ ○	○ ○			△ (라)
	· 기금증식 등을 위한 부동산	291①2 291②7 계)273②2	△ - △	△ - △	△ △ △	△ △ △			
· 4.19혁명부상자회 · 4.19혁명희생자 유족회	· 취득· 소유 부동산 ※ 영 제79①7호	계)270④	○	○	○	○	○	○	
산업체부실증· 고교	· 교육용 부동산	284 계)272①2	○ ○	○ ○	○ ○	○ ○	○ ○	○ ○	○ ○
산재의료관리원	· 의료 및 재활사업용 재산 -직업재활· 의료· 복지 휴양용 부동산	270② 계)278③	○ ○	○ ○	○ ○	○ ○			
	-기타 업무용 부동산	"	○	○	△	△			

※ 작성순서 : 가나다순, 용례 : ○→100% 면제, △→ 50% 경감

법인·단체명	감면내용	법조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도시 계획세	공 동 시설세	사 업 소 세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업무용 부동산	280⑦ 계)279	△ △	△ △					
	·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및 부속토지 등	279① 계)삭제	- -	- -	○ -	○ -	○ -	○ -	
산림조합	· 농어민용자 담보물 등기 (중앙회 포함)	264① 계) "	- -	○ ○					
	· 사업소세 감면	266⑥ 계) "	- -	- -	- -	- -	- -	- -	△ △
※ 중앙회	· 일선조합의 고유업무용 부 동산	290②4 290③7 계)266⑤	○ - ○	○ - ○	○ ○ ○	○ ○ ○			
	·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등 부동산 ※ 조례로 초과 규정	266③ 계)266③	△ △	△ △	△ △	△ △			
	· 중앙회의 회원 교육· 지도· 지원· 공동이용 시설용 부동산 (임대용 제외)	266④ 계)266④2	△ 25%	△ 25%					
	· 신용사업용 부동산								
신용협동조합	· 농어민용자 담보물 등기 (중앙회 포함)	264① 계) "	- -	○ ○					
	· 일선조합의 사업소세 감면 · 일선조합의 사업용 부동산	269⑨ 290②9 290③5 계)272③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회	· 중앙회의 사업용 부동산	269⑩ 계)272④	△ △	△ △					
	· 사업소세 경감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부동산	269⑨ 290①14 계)272②	- ○ ○	- ○ ○	- ○ ○	- ○ ○	- ○ ○	- ○ ○	△ △
새마을 금고	· 농어민용자 담보물 등기 (중앙회 포함)	264① 계) "	- -	○ ○					
※ 연합회	· 사업소세 경감 · 일선금고의 업무용 부동 산	269⑨ 290②10 290③6 계)272③	- ○ - ○	- ○ - ○	- ○ ○ ○	- ○ ○ ○	- -	- -	△ △
	· 연합회의 사업용 부동산	269⑩ 계)272④	△ △	△ △					

2001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

※ 작성순서 : 가나다순, 용례 : ○→100% 면제, △→ 50% 경감

법인·단체명	감 면 내 용	법조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토세	도 시 계획세	공 동 시설세	사 업 소 세
서울대학교병원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부동산	290①15 계)287①4	○ ○	○ ○	○ ○	○ ○	○ ○	○ ○	
산업협동조합	· 농어민용자 담보물 등기 (중앙회 포함)	264① 계) "	- -	○ ○					
	· 사업소세 감면	266⑥ 계) "	- -	- -	- -	- -	- -	- -	△ △
※ 중앙 회	· 일선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임대용 제외	290②2 290③2 계)266⑤	○ - ○	○ - ○	○ ○	○ ○			
	·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등 부동산 ※ 조례로 초과 규정	266③ 계)266③	△ △	△ △	△ △	△ △			
	· 중앙회의 회원 교육· 지도· 지원· 공동이용 시설용 부동산 (임대용 제외)	266④ 계)266④1	△ △	△ △					
	· 신용사업용 부동산	266④ 계)266④2	△ 25%	△ 25%					
	· 의료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부동산	290①9 계)288①4	○ ○	○ ○	○ ○	○ ○	○ ○	○ ○	
에너지관리공단	· 종합에너지회관 건설용 부동산	269⑦ 계)삭 제	△ (과세)	△ 전환)					
의료법인	·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토정소재지 이상 시지 역 → 등록세 과세	290①17 계)287②	○ ○	○ ○	○ ○	○ ○	○ ○	○ ○	
의료보험조합 ※2000. 7. 1. 폐지 로 삭제→건강보 험 심사평가원으 로 대체	· 의료보험관리업무용 부동산 · 일선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 연합회의 의료 및 복지 시설용 부동산	273③ 290②8 291②4 273⑤	○ ○ - △	○ ○ - △	○ ○ △	○ ○ △	- -	- ○	
연연초생산협동조합	· 사업소세 감면	266⑥ 계) "	- -	- -	- -	- -	- -	- -	△ △
	· 일선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임대용 제외	290②5 290③8 계)266⑤	○ - ○	○ - ○	○ ○	○ ○			
※ 중앙 회	· 중앙회의 회원 교육· 지도· 지원· 공동이용시설용 부동산 (임대용 제외)	266④ 계)266④1	△ △	△ △					
	· 신용사업용 부동산	266④ 계)266④2	△ 25%	△ 25%					

※ 작성순서 : 가나다순, 용례 : ○→100% 면제, △→ 50% 경감

법인·단체명	감면내용	법조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토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영농조합법인	· 영농·유통·가공사업용 부동산	267④ 계)266⑦	○ △	○ △	○ △	○ △	-	-	○ (24)
	· 법인설립 등기	267⑤ 계)266⑦	- -	○ ○					
영어조합법인	· 영어·유통·가공사업용 부동산	267④ 계)266⑦	○ △	○ △	○ △	○ △	-	-	○ (24)
	· 법인설립 등기	267⑤ 계)266⑦	- -	○ ○					
지방의료공사 ※ 삭 제	· 사업소세 경감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269⑨ 290①16 계)삭제	- ○	- ○	- ○	- ○	- ○	- ○	△ -
지적측량대행법인 ※ 삭 제	· 고유업무용부동산	291②14 계)삭제	- -	- -	△ (24)	△ (24)			
제일 학도의용군 동지회	· 취득·소유 부동산 ※ 영 제79①7호	계)270④	○	○	○	○	○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할 부동산 ※ 조례로 조례규정 가능(제280⑦)	280② 계)280①	○ △	○ △	△ △	△ △			
	· 중소기업 종합유통 및 교육시설용 부동산	280⑧ 계)280②	△ △	△ △					
	·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및 부속토지 등	279① 계)삭제	- -	- -	○ -	○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등 포함	·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등 공동시설용 부동산	280⑧ 계)280②	△ △	△ △					
	·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및 부속토지 등	279① 계)삭제	- -	- -	○ -	○ -	○ -	○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법인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용 부동산	273⑦ 계)288③	○ ○	○ ○	△ △	△ △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체육진흥·청소년단체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290①18 계)288②	○ ○	○ ○	○ ○	○ ○	○ ○	○ ○	
한국경생보호공단 -경생보호사업 법인	· 경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290①5 계)271③	○ ○	○ ○	○ ○	○ ○	○ ○	○ ○	
한국건강관리협회	· 사업용 부동산	290①3 계)287①2	○ ○	○ ○	○ ○	○ ○	○ ○	○ ○	
한국가스공사 -도매사업자	· 도시 가스관	269⑤ 계)281①	○ ○	- -	○ ○				

2001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

※ 작성순서 : 가나다순, 용례 : ○→100% 면제, △→ 50% 경감

법인·단체명	감면내용	법조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도시 계획세	공 동 사 실세	사 업 소 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철도차량 및 고속철도건 설용 부동산	289③ 계) 289④	○ ○	○ ○	○ ○	○ ○	○ ○	○ ○	○ ○
한국무역협회	· 2000년아시아· 유럽정 상회의장 신· 증축 건 축물 및 부속 토지	280⑥ 계) 280⑥	○ (라)	○ -- (2001)	△ - (조례)	△ - (조례)			
	· 기부채납 공공시설물과 부속토지 등	279① 계) 삭제	- -	- -	○ -	○ -	○ -	○	
한국보훈복지공단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부동산	270② 계) "	○ ○	○ ○	○ ○	○ ○			
한국산업단지공단	· 분양 임대용 단지, 아파 트형 공장, 근로자후생복 지· 주택건설용 등 부 동산	276④ 계) 276③	○ ○	○ ○	△ △	△ △			
한국산업안전공단	· 산재예방시설 설치· 운 영 및 교육용 부동산	290④2 291①5 291②10 계) 278⑤	○ △ - ○	○ △ - ○		△ △ △			
		290④4 291①1 291②5 계) 278⑤	○ △ - ○	○ △ - ○		△ △ △			
한국소비자보호원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부동산	290①8 계) 288①3	○ ○	○ ○	○ ○	○ ○	○ ○	○ ○	
한국수자원공사	· 분양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	278② 계) 289②	○ ○	○ ○	- -	△ 25%			
	· 기부채납 공공시설물과 부속토지 등	279① 계) 289⑤	- -	- -	○ ○	○ ○	○ ○	○ ○	
한국자유총연맹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부동산	290①12 계) 288①7	○ ○	○ ○	○ ○	○ ○	○ ○	○ ○	
한국자원재생공사	· 재활용자원시설 및 비축 기지 등	290④3 291①4 291②9 계) 286②1	○ △ - ○	○ △ - ○		△ △ △			
		· 기타 사업용 부동산	계) 286②2	△	△	△	△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수익사업용 제외	290②12 291②13 계) 271②	○ - ○	○ - ○	△ △ △	△ △ △			
한국청소년연맹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부동산	290①10 계) 288①5	○ ○	○ ○	○ ○	○ ○	○ ○	○ ○	

※ 작성순서 : 가나다순, 용례 : ○→100% 면제, △→ 50% 경감

법인·단체명	감면내용	법조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도시 계획세	공 동 시설세	사 업 소 세
한국토지공사	· 제3자에게 공급할 일시 취득 부동산	278① 계)289①	○ ○	○ ○	- -	△ 25%			
	·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및 부속토지 등	279① 계)289⑤	- -	- -	○ ○	○ ○	○ ○	○ ○	
한국 해양소년단연맹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한 부동산	290①11 계)288①6	○ ○	○ ○	○ ○	○ ○	○ ○	○ ○	
한국 해양오염방제조합	· 해양오염방제용 선박	269⑥ 계)286③3	○ ○	○ ○	△ △				
	· 방제용 자재, 약제, 장비 비축용 부동산	290②11 290③10 계)286③1	○ -	○ -	○ ○	○ ○			
	· 폐기물저장 및 폐유처리 시설용 부동산	계)286③2	○	○	△	△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	· 항만시설 개발사업용 부 동산	278③ 계)289③	○ ○	○ ○	- -	△ △			
	· 기부채납 공공시설물과 부속토지 등	279① 계)289⑤	- -	- -	○ ○	○ ○	○ ○	○ ○	
환경관리공단	· 사업용 부동산(수익사업 용 제외)	269⑧ 계)286①	△ △	△ △					

사업·사무별 지방세 과세면제 및 감면현황

용례 : ○→100% 면제, △→ 50% 경감

구분	감면내용	법조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도시 계획세	공 동 시설세	사 업 소 세
자경 농민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 취득	261① 계) "	△ △	△ △					
	· 양잠·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 리시설, 저온·상온·농기계보관 창고, 선별처리시설	261② 계) "	△ △						
농기계류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경운기 등 농기계류	262① 계) "	○ ○	자동차세 ○ ○					
소형어선	· 20톤 미만	262② 계) "	○ ○	○ ○	○ ○	- -	- -	○ ○	
관정시설	· 농업용수 공급용	262③ 계) "	○ ○						

2001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

용례 : ○→100% 면제, △→ 50% 경감

구 분	감 면 내 용	법조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도 시 계획세	공 동 시설세	사 업 소 세
개간 농지 등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농지 -농지확대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개간농지	263① 계) "	○ ○	○ ○					
교환·분합 농지 및 임야	·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거나, 농업 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 농지 · 임업후계자 등의 교환·분합 임야 · 임업후계자 등이 보전임지(99만㎡ 이내) 취득	263② 계) "	○ ○ △ △	○ ○ △ △					
간척 농지	· 공유수면 매립 또는 간척으로 취득 하는 농지	263③ 계) "	○ ○						
농어촌 空家	· 농어촌지역의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 주거용 건축물	265② 계)265	- -	- -	○ ○				
어민등의 어 업권 및 어선	· 어민, 어민후계자, 관련학과 이수자 등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	267① 계) "	△ △	△ △					
출원 어업권	· 출원에 의한 어업권	267② 계) "	○ ○						
농업·임업 · 축산업· 수산업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	267③ 계) "	- -	- -	- -	- -	- -	- -	○ ○
교환 자동차	·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 자동차	268① 계)268	○ ○	○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 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 동산 · 대부받기 위한 저당권 설정등기	270① 계) "	○ ○ - -	○ ○ ○ ○					
노 인 정	· 노인정용 부동산 -유료부분 제외	271 계)271①	- -	- -	○ ○	○ ○	○ ○	○ ○	
신문·통신업	· 신문·통신업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272 계)283③	- -	- -	- -	- -	- -	- -	△ △
법인의 지방 이전	· 대도시외로 이전 후 2002.12.31.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2002.12.31.까지 대도시외로 이전 하는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	274① 계) " 274② 계) "	○ ○ - -	○ ○ ○ ○					
공장의 지방 이전	· 대도시외로 이전하여 2002.12.31.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75① 계) "	○ ○	○ ○					

용례 : ○→100% 면제, △→ 50% 경감

구 분	감 면 내 용	법조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도 시 계획세	공 동 시설세	사 업 소 세
산업단지 등 에 입주자	· 산업(기술)단지, 공장유치지역내 공장 신·증축용 부동산	276①	○	○	△ (5년)	△ (5년)			
		계) "	○	○	△ (5년)	△ (5년)			
산업단지 등 을 조성 입주 하는 자	·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공장 신·증축용 부동산 취득 · 신·증축 공장용 건축물 · 단지조성 공사중인 토지 · 단지조성 완료 토지	276②1	○	○					
		계) "	○	○					
		276②2	-	-	△ (5년)				
		계) "	-	-	△ (5년)				
산업단지 등 사업 시행자	·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집적 시설시행자가 단지개발 조성 후 분양, 임대할 부동산 취득	276④	○	○	△	△			
		계) 276③	○	○	△	△			
관광단지	· 관광단지 개발용 부동산	277①	△	△					
계) "		△	△						
개발촉진지구	· 사업시행자가 개발촉진지구로 고 시된 토지 구입	277②	○	○	△ (5년)	△ (5년)			
계) "		○	○	△ (5년)	△ (5년)				
협동화사업 단지	·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을 얻은 자 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 대할 단지용 부동산 ※ 조례로 초과규정 가능 (제280 ⑦)	280①	○	○	△	△			
계) "		△	△	△	△				
소기업등 중 과배제	· 소기업,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산업 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한 중과배제	280⑨	중 과 제 외	중 과 제 외	중 과 제 외				
계) 280③		"	"	"					
창업보육센 터용 부동산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280④	○	○	△	△			
계) "		○	○	△	△				
유통단지	· 유통단지 개발사업자가 단지개발용 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유통사업자가 유통사업용으로 취득 하는 부동산	280⑤1	○	○	△	△			
		계) "	○	○	△	△			
계) 280⑤2		○	○	△ (5년)	△ (5년)				
				△ (5년)	△ (5년)				

2001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

용례 : ○→100% 면제, △→ 50% 경감

구 분	감 면 내 용	법조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도 시 계획세	공 동 시설세	사 업 소 세
도시가스업	· 도시가스 사업 -조례로 추가가면 가능(제281③) ※ 특별시· 광역시는 2002년말까지 감면	289⑤ 계)281②	○ ○	- -	○ △				
법인 합병	· 합병법인 등기 및 양수재산 등기	281② 계)283①	- -	○ ○					
직업훈련시설용 부동산	· 직업훈련시설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와 건축물	283 계)278①	○ △	○ △	○ ○	○ ○			
광업권 및 광산용 임목	· 출원에 의한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	285① 계) "	○ ○						
항공기	· 정기 및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287 계)284①	○ ○	- -	△ △				
선 박	· 임대차방식 연불수출 선박	288 계)284④	○ ○	○ ○	○ ○	- -	- -	○ ○	
	·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한 선박	289① 계)284②	○ ○	- -	△ △	- -	- -	○ ○	
	· 연안화물 운송 및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	289② 계)284③	△ △	- -	△ △				
중고자동차	· 판매업자 명의로 된 중고자동차 ※ 시행령 146조의2(비과세 규정)으로	268 계)삭 제	자동차 세△ -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覆蓋設備(복개설비)

취득세 課稅對象物件인 構築物의 일종으로서 溝渠, 河川, 溜池, 海面등에 지하의 空間을 유지한 채 덮개를 덮는 설비를 말한다. 覆蓋設備은 그 시설위에 별도의 시설물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두 取得稅課稅對象 物件이 된다(地稅令§7575의2II).

- 편집실 -